

대전고등법원 2021. 4. 7 선고 2020나12408(본소), 2020나1241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계약금액반환 청구]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21. 4. 7 선고 2020나12408(본소), 2020나12415(반소)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16가합107695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공

담당변호사 이명의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이상섭

변론 종결2021. 3. 9.

판결 선고2021. 4. 7.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16가합107695(본소), 2017가합104051(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기재 계약과 관련한 환수금 채무는 아래 나.항의 돈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81,267,6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2021. 4. 7.까지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90%는 원고(반소피고)가, 1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별지 기재 계약과 관련한 543,119,325원¹⁾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93,736,960원²⁾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2017. 7. 4.까지 연 6%,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제1심에서 543,119,3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고,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건설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1. 12. 21.부터 2015. 2. 11.까지 피고 산하 조달청장과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20. 9. 29. 대통령령 제310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절차를 통하여 토목용 보강재에 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물품구매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1.12.21.	B	2011.12.21.~2012.11.30.	200,000	1,665,000,000	대지급3) 조달청장은 체결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로서 납품업체의 규모, 계약 방법, 자체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 이행의 대금을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대지급하여야 한다(구 조달사업법 제5조의4 제1항).
2013.1.11.	C	2013.1.11.~2013.11.30.	240,000	2,094,000,000	대지급
2014.3.26.	D	2014.3.26.~2014.12.31.	240,000	2,094,000,000	대지급
2014.8.22.	E	2014.3.26.~2014.12.31.	240,000	2,094,000,000	대지급
2015.2.11.	F	2015.2.11.~2015.12.31.	120,000	1,059,000,000	대지급

2)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의 대상인 토목용 보강재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된 계약물품의 계약단가는 아래와 같다.

G	5,900	5,900	5,900	5,900	
H	7,700	7,700	7,700	7,700	
I	9,900	9,900	9,900	9,900	
J	11,000	11,000	11,000	11,000	
BV	6,000	6,000	6,000	6,000	6,000
BW	7,500	7,500	7,500	7,500	7,500
BX	9,600	10,300	10,300	10,300	10,300
BY	10,500	11,500	11,500	11,500	11,500

3)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에는 각 구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011. 7. 29. 조달청공고 제2011-40호로 개정되어 2011. 7. 29. 시행된 것, 2012. 8. 24. 조달청공고 제2012-56호로 개정되어 2012. 8. 25. 시행된 것, 2013. 9. 23. 조달청공고 제2013-48호로 개정되어 2013. 10. 1. 시행된 것, 2014. 3. 24. 조달청공고 제2014-24호로 개정된 것, 위 각 특수조건은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이하 마지막 특수조건을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되어 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적용)

이 사건 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사건 특수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의3(납품요구)

① 본 계약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으로서 수요기관이 직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조달청 확인) 계약자에게 납품요구하며, 수요기관은 납품요구 시 본 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제11조(우대가격 유지의무)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수요기관에게 가장 우대하는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수요기관과 계약체결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통보를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 납품할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약단가를 인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의 시장공급가격(계약상대자가 가격 관리가 가능한 총판 공급가격, 직영대리점 판매가격 또는 자사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에 등재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4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달가격이 우대가격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단가를 시장공급가격 이하로 인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한 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납품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으며, 이미 대가가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다른 지급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서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가로 구매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대금을 환수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다른 지급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각 수요기관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의 허위 가격자료 제출

1) 원고는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각 가격자료를 제출하였다.

2) 감사원은 2016. 10. 14.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금액과의 차액 환수, 형법 위반 고발 등 자격·인증 관리실태 점검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통보하였다.

3) 원고의 대표이사인 K은 '토목용 보강재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참가하여 허위의 가격자료를 다수공급자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공무원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사실 및 '위와 같이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달청과 사이에 조달물자 구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로 2019. 12. 20.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303호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의 경영지원팀

팀장인 L, 경영지원팀 부장인 M도 그 중 일부에 공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9. 12. 28.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환수통보

1) 원고의 대표이사 K, 경영지원팀 팀장 L, 경영지원팀 부장 M는 위 나.의 3)항 기재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의 대상이 된 토목용 보강재를 일반 시장에서 아래 표와 같은 가격(이하 '시장공급가격'이라 한다)으로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	2,970	2,970	2,970	
H	3,080	3,080	3,080	
I	3,300	3,300	3,300	
J	3,740	3,740	3,740	
BV	1,320	2,286	2,286	1,346
BW	1,980	2,631	2,631	1,567
BX	2,530	2,851	2,851	1,930
BY	3,630	3,630	3,630	2,750

2) 피고는 2016. 11. 21. 원고에게 이 사건 특수조건 제13조에 의하여 부당한 가격자료 제출에 따라 고가 계약체결됨으로 인한 부당이익금 543,119,325원[557,137,178원(이 사건 물품구매계약 단가와 피고가 적용한 시장공급가격의 차액에 대금지급으로 거래종결된 납품량을 곱한 금액) - 14,018,393원(납품수량이 변경, 취소되거나 피고가 지급을 유보한 금액4)]을 환수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환수통보'라고 한다)를 하였고, 위 환수통보는 2016. 11. 22.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1)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장이 각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되,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구 조달사업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조달청에서 입찰 공고된 세부품명

기준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를 포함한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가격협상이 성립된 계약대상자의 수요물자를 나라장터에 등록하면, 수요기관은 직접 나라장터를 통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수요물자에 대해 납품요구를 한다. 납품업체가 납품 등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면 조달청은 납품대금을 대지급하고 수요기관으로부터 그 대금을 회수한다.

2) 다수공급자물품계약은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를 선정함에 있어 적격성평가와 가격협상절차를 거치고 구매공고 당시부터 구매대상 물품에 대해 다수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격성평가와 가격협상절차 없이 한 명의 계약상대자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인 조달물자 구매계약과 차이가 있고,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단계까지는 조달청장이 수요물자의 단가만을 정하고 해당 물자의 납품요구는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하는 소위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방식을 택하고 있다[구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2013. 2. 21. 조달청훈령 제1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2조, 이 사건 특수조건 제6조의3].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따른 계약금액의 지급은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대지급)이 원칙이다(구 조달사업법 제5조의4 제1항).

3)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단가는 계약담당과장이 계약상대자로부터 2개월간 민간업체에 판매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의 전자세금계산서 등 가격자료를 제출받아 마련한 협상기준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업무처리규정 제13조, 제15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가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한 것과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의 계약단가 결정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이 사건 특수조건 제13조 제1항의 환수금액은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체결되었을 적정한 계약단가'를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체결되었을 적정한 계약단가'는 감정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감정을 신청하지 않았고 달리 위 적정한 계약단가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 피고는 스스로 적용한 시장공급가격을 기준으로 543,119,325원의 환수통보를 하였는데, 피고가 적용한 시장공급가격이 위 적정한 계약단가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

3) 고가 구매로 인한 피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수요기관이므로 피고가 환수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환수통보 받은 543,119,3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위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가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에서 고가 구매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수조건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고가 구매금액 상당액을 원고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2) 원고의 직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의 토목용 보강재에 대한 시장공급가격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원고가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피고는 위 시장공급가격을 기초로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므로, 위 시장공급가격이 적정한 계약단가에 해당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위 시장공급가격과 계약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인 환수금액 493,736,960원(별지 중 '최종 환수금액' 합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환수금 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요건 이 사건 특수조건 제13조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서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가로 구매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계약상대자에게 진실한 가격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고가로 결정된 결과 국가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 특수조건 제13조 제1항의 환수금 청구권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 82951 판결 참조).

피고는 위 환수금 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는바, 환수금 청구를 위해서는 ① 원고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서류라는 점, ② 그와 같은 허위의 가격자료 제출로 인하여 피고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켜 계약금액을 높게 책정하였다는 점, ③ 그로 인하여 피고가 고가 계약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아래에서 위 사항에 관하여 차례로 본다.

2) 원고가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을 제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조달청장으로부터 토목용 보강재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자로 선정된 사실과 함께 가격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주식회사 R, S 주식회사, 주식회사 AA 등에 실제로 공급한 가격보다 높은 단가를 기재한 가격 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및 이를 뒷받침하는 허위의 거래명세표, 수량 및 단가를 공란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허위의 가격자료 제출로 인하여 고가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이를 신뢰한 피고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켜 계약금액을 높게 책정하여 고가의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바,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의 적격자로 하여금 제3조 제9호의 가격자료[가격자료 제출서, 가격 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가격증빙자료(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매출원장 사본 등)]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월 기준 2개월간의 거래자료를 규격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13조 제1항).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가격자료가 불명확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 조사를 할 수 있다(제13조 제3항). 계약담당과장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제출서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한다. 협상기준가격은 적격자별로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제15조 제1, 2항).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제안서에 납품요구금액별로 적용할 할인율을 2단계 이상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제17조 제1항).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적격자(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허위로 고가의 가격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는 고가의 계약을 체결하는 원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의 경우 피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고가 제출한 가격자료(가격 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위 업무처리규정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원고가 실제 거래보다 상당히 부풀린 가격자료가 아닌 진실한 가격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은 위 진실한 가격자료에 기초하여 위 각 계약보다 훨씬 낮은 단가를 적용하여 체결되었을 것이다(원고가 제출한 가격자료는 원고의 직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시장공급가격보다 2~3.5배 높은 것이다5)).

③ 원고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는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가격조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계약단가를 정하게 되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불명확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비로소 가격조사를 실시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가격자료는 협상기준가격의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자료이다. 또한 이 사건에서 각 물품구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제출한 가격자료에 관하여 '가격자료가 불명확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어 이 사건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가격조사를 할 의무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가격자료를 제출하면서 '본 가격자료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가격자료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 문구를 날인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제출하는 가격자료를 신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단가가 결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⑤ 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를 신뢰하고 협상기준가격을 정하게 되고, 다만 가격자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제, 나라장터 거래정지,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사후적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조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가격이나 거래 실정에 대해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

계약담당공무원이 수많은 조달계약 건에 대하여 일일이 실제 조사를 거쳐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데다가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점, 그렇게 할 경우 오히려 현실을 도외시킨 부적절하거나 자의적인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단 계약당사자가 제출한 서류가 진실함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환수금 청구 등 사후 규제조치를 하는 것이 부적정한 업무처리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4) 피고가 고가 계약 금액 상당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 및 '고가 계약 금액'의 산정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실제 거래보다 상당히 부풀린 가격자료가 아닌 실제 가격자료를 제출하였다면 피고는 그 가격자료에 기초하여 산정된 협상기준가격을 토대로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의 계약단가와 실제 가격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계약단가와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격자료를 제출하였다(을 제9호증). 피고는 위 가격자료에 기재된 가격에 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위 가격자료보다 낮은 금액으로 각 계약단가를 결정하였다.

G	8,140	8,360	7,700	-	5,900	2015. 2. 11.자 계약에는 없음
H	10,780	11,000	10,120	-	7,700	
I	13,750	13,970	12,870	-	9,900	
J	15,400	15,620	14,300	-	11,000	
BV	8,250	8,470	7,810	7,810	6,000	
BW	10,450	10,670	9,790	9,790	7,500	
BX	14,080	14,300	13,420	13,420	9,600	2013. 1. 11.자 계약 이후 10,300원
BY	15,950	16,170	14,960	14,960	10,500	2013. 1. 11.자 계약 이후 11,500원

다) 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의 가중평균가격 또는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협상기준가격이 결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의 가격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실제 가격자료의 가중평균가격 또는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협상기준가격이 결정되었을 것이고,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의 계약단가 결정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원고의 시장공급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약단가가 정해지지 않는 것일 것이다. 원고의 직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에 관해 앞서 본 '1. 다. 1)'항 기재 가격이 원고의 시장공급가격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실제 가격자료가 제출되었다면 피고는 위 시장공급가격 이상으로는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의 계약단가와 위 시장공급가격의 차액이 '고가 계약 금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는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라) '고가 계약 금액' 산정 방법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 물품의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시중단가를 감정의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위 일반시중단가를 기초로 '고가 계약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원고의 직원들인 K, L, M가 감사원 조사 또는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6건의 민간거래내역에 근거한 것이어서 일반시중단가가 아니므로, 위 진술을 근거로 산정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고가 계약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특수조건 및 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의 적정한 계약단가는 원고의 시장공급가격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시장공급가격에 대하여는 원고의 직원들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진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경영지원팀 팀장 L은 2016. 4. 21.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개 내지 3개 업체에 판매한 단가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원고의 '토목용 보강재 시장공급가격6)'을 확인하였다(을 제11호증의 7). L은 수사기관에서도 위 시장공급가격을 인정하였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가격 역시 비슷하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3호증의 8). 원고의 대표이사 K과 경영지원팀 부장 M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 시장공급가격을 인정하였다(을 제13호증의 6, 7). 원고 직원들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시장공급가격 산출 당시 고려한 자료가 6건의 민간거래내역이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으며, 위 시장공급가격을 초과하는 '일반시중단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는 업무처리규정에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월 기준 2개월간의 거래자료를 제출받아 협상기준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에 대한 적정 계약단가도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월 기준 2개월간의 가격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일을 기준으로 2개월 동안의 민간거래내역이 전혀 없으므로 적정한 계약단가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일부 사례에 불과한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적정 계약단가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의 계약단가가 적격자통보일 전월 기준 2개월간의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결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에 대한 적격자통보일 전월 기준 2개월의 기간을 포함한 해당년도 전체의 실제 거래단가가 위 시장공급가격이라는 점을 인정한 이상, 급격한 가격변동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격자통보일 전월 기준 2개월간의 시장공급가격 역시 같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1. 12. 21.자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그 적격자통보일 전월 기준 2개월간의 시장공급가격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계약에 대한 환수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위 물품구매계약에 대한 환수금을 산정함에 있어 2012년의 시장공급가격을 적용하고 있는바, 위 물품구매계약일이 2011. 12. 21.로서 2012년을 불과 10일 정도 앞선다는 점, 계약 품목의 거래가격이 2012년 이후로도 동일하거나(G, H, I, J 및 BY 품목), 2012년 이후 3년간 상승하는 추세(BV, BW, BX 품목)인 점, L이 수사기관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시장공급가격이 비슷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 적격자통보일 전월 기준 2개월간의 시장공급가격이 2012년의 시장공급가격 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물품구매계약에 적용할 시장공급가격을 2012년의 시장공급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 체결을 위해 민간계약에서 요구되지 않는 입찰보증금, 품질인증비 등 부대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부대비용을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될 적정 계약단가'를 산정하는 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조건 제11항에 의하면, 원고는 시장공급가격 이하로 조달청 계약단가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우대가격 유지의무), 원고가 사인과의 계약과 달리 조달청과의 계약 체결을 위해 지출한 부대비용(입찰보증금, 품질인증비 등)이 '적정 계약단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 사건 특수조건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원고가 주장하는 부대비용은 정부 조달시장 진입기회 등 직·간접적 이익을 위한 기회비용에 해당하고, 이를 계약상대방인 피고가 보전해 줄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 체결 이후 각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설계비, 영업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되므로, 이러한 비용을 반영하여 적정 계약단가가 산정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규격화된 토목용 보강재 납품 의무만 있을 뿐 어떠한 용역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을 제1 내지 5호증, 물품 인도조건이 '납품장소 하차도7') '로 정해져 있고 설계용역 수행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설계용역 등과 같은 제반비용이 계약단가에 포함될 근거가 없다. 이 사건 특수조건의 우대가격유지의무 및 업무처리규정의 계약가격 결정방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에 원고 주장과 같은 수요기관별로 특별히 발생할 설계비용 등이 반영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개별 수요기관 및 별도로 필요한 용역 내용이 특정될 수 없는바, 미리 설계용역 등을 예상하여 그 비용을 계약단가에 포함시킬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설령 원고가 개별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설계용역 수행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과는 무관한 비용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환수금 채권의 액수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의 계약단가와 앞서 본 시장공급가격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구체적인 손해액은 원고가 납품한 품목별 계약단가와 시장공급가격의 차액에 원고가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물량(별지 기재 '종결수량')을 곱한 금액이고, 그 합계액은 별지 기재와 같이 481,267,687원이 된다(별지 중 '인정금액'의 합계액이다. 피고는 환수금 채권 합계액이 493,736,96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일부 품목에 대하여 시장공급가격을 잘못 적용함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중 해당 부분 각주 참조). 피고의 환수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아래와 같이 각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 납품을 요구한 부분은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납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환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3. 1. 11.(2013. 1. 11.~2013. 11. 30.)	부산지방청	2014. 12. 29.	C	T	울산광역시 울주군	2013. 11. 18.
2014. 6. 9.	U	울산광역시 남구	2013. 3. 19.			

2013. 1. 11.(2013. 1. 11.~2013. 11. 30.)	부산지방법청	2014. 12. 29.	C	T	울산광역시 울주군	2013. 11. 18.
2014. 3. 26.(2014. 3. 26.~2014. 12. 31.)	부산지방법청	2015. 1. 8.	V	W	울산광역시 교육청	2014. 4. 11.
2015. 2. 11.(2015. 2. 11.~2015. 12. 31.)	경남지방법청	2016. 9. 2.	F	N	경상남도 양산시	2015. 3. 17.

그러나 을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계약 건의 경우 수요기관이 당초 해당 계약기간 중에 납품 요구를 하였다가 이후 납품요구수량을 변경(감축)한 결과 계약기간 이후에 재차 납품 요구를 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납품물량 또한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납품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에게 환수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수요기관일 뿐 피고가 아니므로 피고에게 환수금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환수금 채권의 법적 성질이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상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임은 앞서 인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위 각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 각 계약에 편입된 이 사건 특수조건 제13조 제1항은 피고가 환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위 각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는 피고가 부담하고, 수요기관은 위 각 계약에서 확정된 가격으로 물품의 납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이며, 최종적으로 수요기관이 납품대금을 부담한다는 사정은 피고와 수요기관 사이의 내부적 정산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고가 구매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과실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격조사를 할 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환수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가격조사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계약단가를 정하게 되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불명확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비로소 가격조사를 실시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하게 되는바,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제출한 가격자료에 관하여 '가격자료가 불명확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어 이 사건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가격조사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가격조사 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서 채무자가 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거나 이에 적극 편승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 채무자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등과 같이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과실에 터 잡은 채무자의 과실상계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886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의 계약단가가 원고가 제출하는 가격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었다. 원고는 민간거래에서 실제로 공급한 가격보다 높은 단가를 기재한 가격 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및 이를 뒷받침하는 허위의 거래명세표, 수량 및 단가를 공란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위 가격자료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사실과 상위 없음'이라는 문구 등을 날인하여 적극적으로 피고의 계약담당공무원을 기망하였다. 그 결과 시장공급가격보다 2~3.5배 고가로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환수금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계약담당공무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결과 그 착오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잘못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8)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환수금 481,267,68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환수통보를 받은 다음날인 2016. 11. 23.부터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별지 기재 각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환수통보로써 543,119,325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후 이 법원에서 493,736,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481,267,6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2021. 4. 7.까지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환수금 채무는 위 돈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박선준

판사정정미

판사이흥주

별지

- 1) 별지 중 '변경 전 환수금액'란의 합계액이다.
- 2) 별지 중 '최종 환수금액'란의 합계액이다.
- 3) 조달청장은 체결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로서 납품업체의 규모, 계약 방법, 자체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 이행의 대금을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대지급하여야 한다(구 조달사업법 제5조의4 제1항).
- 4)

20140805	N	1,392,053	납품요구 수량이 변경(감경)되었음
20131001	N	1,446,480	
20141226	O	8,101,080	

20140805	N	1,392,053	납품요구 수량이 변경(감경)되었음
20140725	O	866,640	업체에게 미지급(조달청 유보 중)
20131220	P	108,780	
20131212	P	1,745,640	
20131212	P	259,440	
20131114	Q	98,280	납품요구 취소
합계	-	14,018,393	-

5)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의 계약단가와 원고의 직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시장공급가격의 비교

G	5,900(2,970)	5,900(2,970)	5,900(2,970)	
H	7,700(3,080)	7,700(3,080)	7,700(3,080)	
I	9,900(3,300)	9,900(3,300)	9,900(3,300)	
J	11,000(3,740)	11,000(3,740)	11,000(3,740)	
BV	6,000(1,320)	6,000(2,286)	6,000(2,286)	6,000(1,346)
BW	7,500(1,980)	7,500(2,631)	7,500(2,631)	7,500(1,567)
BX	9,600(2,530)	10,300(2,851)	10,300(2,851)	10,300(1,930)
BY	10,500(3,630)	11,500(3,630)	11,500(3,630)	11,500(2,750)

6) 이 판결 1. 다. 1)항의 시장공급가격이다.

7) 납품장소까지 가서 물건을 내려주는 것